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납본 대상 제외〉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50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정의 신설, 납본 대상 제외, 거짓 표시 등을 통한 납본 금지 및 과태료 부과(안 제3조제5호의2 신설, 제21조 제1항·제3항 및 제55조제1항)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전용기의원 등 16인
2. 발 의 일 : 2026. 3. 13.
3. 회 부 일 : 2026. 3.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한 경우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를 납본의무를 악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 보상을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대해서는 납본의무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표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납본제도 및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의2, 제21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위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의안번호 제 17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I. 검토의견

1.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정의 신설, 납본 대상 제외, 거짓 표시 등을 통한 납본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안 제3조제5호의2 신설,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55조제1항)

개정안 제3조제5호의2는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1)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자료로서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또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로 정의함.

또한, 안 제21조는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대상에서 제외하고(제1항),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도서관자료로 오인하게 하거나 해당 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하는 행위를 금지함(제3항).

아울러, 안 제55조제1항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자료 납본시 표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5의2. “인공지능 생성자료”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자료로서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또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를 말한다.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u>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u>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 ----- <u>인공지능 생성자료 및 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u>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도서관자료로 오인하게 하거나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55조(과태료) <신설>	제55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을 위반

현 행	개 정 안
①·② (생 략)	<u>한 자에게는 해당 자료 납본 시 표 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 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21조²⁾는 도서관자료의 납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하면서,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된 자료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2)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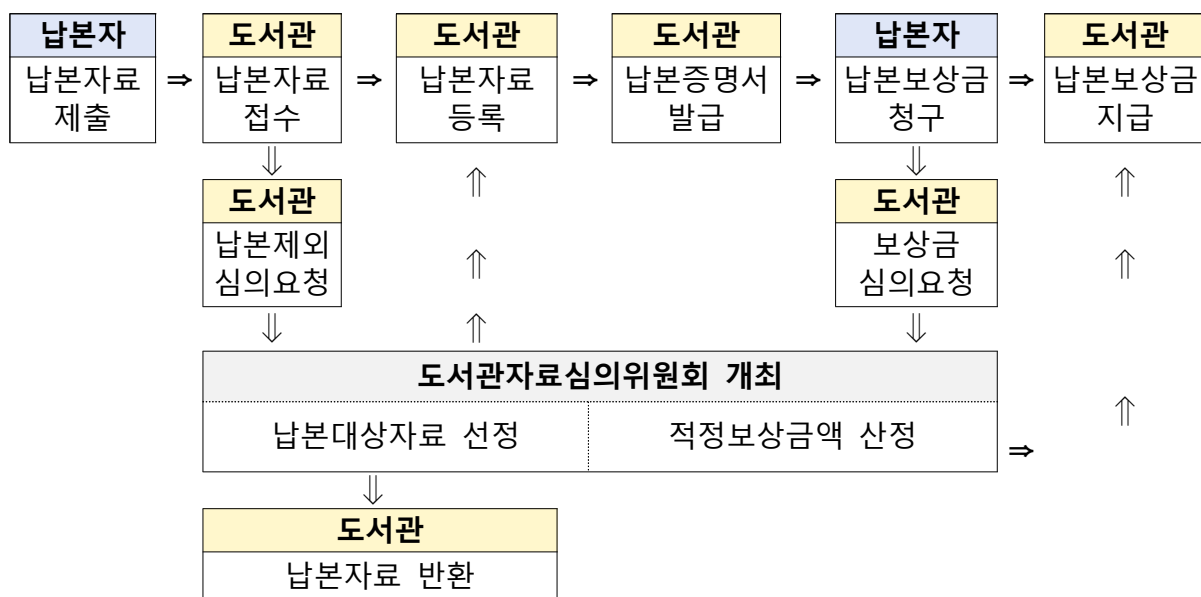
④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공공기관이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납본한 자에게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고, 납본 자료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납본 의무 이행에 따른 절차적·재정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서관자료의 납본 절차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15조³⁾는 납본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형태,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 방식 및 납본 부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 제18조⁴⁾는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3)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자료
4. 마이크로형태(microform: 인쇄물이나 그래픽을 사진이나 전자 방식으로 아주 작게 축소한 형태 또는 매체를 말한다)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본 중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이하 “디지털파일자료”라 한다)의 납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하는 방법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경우
 - 가. 보존용 복제(납본받은 자료의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해당 자료를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동의하는 경우: 1부
 - 나. 보존용 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부.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제4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2. 디지털파일자료가 아닌 도서관자료의 경우
 - 가. 국가등이 납본하는 경우: 3부
 - 나. 국가등 외의 자가 납본하는 경우: 2부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⑤ 국가등이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1부를 추가로 납본해야 한다.

⑥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5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받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본서를 제출한 자나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5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는 자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

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전자 및 종이 출판물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발간하며 별다른 감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포함되고 기본 출처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이 발행 또는 제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⁵⁾

이와 같이 저작물으로써 문제점이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자료들에 대한 납본과 보상은 납본 대상의 과도한 확대와 함께 수집·선별 과정에서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 보존 공간 부족 등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부담⁶⁾ 및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⁷⁾

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되거나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5) “AI ‘딸각 출판’ 최소 9000권, 검증없이 서울대 도서관에 버젓이”, 동아일보, 2025. 11. 27.

6)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자책 납본을 받기 시작한 2016년에는 보상금으로 1,213만원을 지출했으나, 2025년에는 2억 6,276만원을 지출했음.

7) “AI가 9000권 찍어내면, 9000만원 줘야 하는 공공도서관”, 조선일보, 2025. 12. 2.

이에 개정안은 인간의 창의적이고 최소한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자료로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납본 제도 운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출판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아울러, 개정안은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도서관자료⁸⁾로 오인하게 하거나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납본 시 표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타인의 문장 등을 도용하여 위조 및 표절의 우려가 있고 학문적, 공익적 가치가 부족한 자료를 통하여 납본 보상금을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정직하게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저작자와 출판업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들이 납본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표시 등으로 인하여 납본이 금지될 수 있는 인공

8)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지능 생성자료인지 판단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인공지능 생성자료는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또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를 의미하는데, 창의적 개입과 최소한의 개입 모두 그 개념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도서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출판사 등이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가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하거나, 그 부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1745호)이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1745호)은 안 제22조의2제1항9)에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

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1745호, 2026. 12. 3. 시행예정)

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1조에 따른 도서관자료 및 제22조에 따른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납본·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납본 제외 및 부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현재도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¹⁰⁾로 위원은 문헌정보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있음.

따라서,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가 인공지능 생성자료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55조제1항은 과태료를 납본 시 표시된 자료 정가의 30배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획득한 이익의 일정 배수 범위로 과태료를 정하는 입법¹¹⁾의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별도로 두고 있다

-
3. 보상 기준, 보상의 적정성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2조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적정 보상금액의 산정
 2. 자료의 종류·형태 등 납본·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기준
 3.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헌정보학 등 도서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도서관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11)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경우에도 과태료 상한액을 두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한 자료에 대하여 납본 제도를 악용하여 보상받는 등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시 법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의 납본 제외 근거를 신설하고 부정 청구 등에 따른 보상금 환수 조항을 두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1745호)이 시행될 경우 개정안의 취지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음, 국회도서관은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

-
1.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제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3. ~ 6. (생략)

「산림조합법」

제134조(과태료) ④ 제40조의2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아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시 법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음, 법무부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은 수범자에게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불확정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인공지능 관련 다른 법상 개념 등을 고려할 때,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또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를 “인공지능 생성자료”로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체 법체계 관점에서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납본 관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음, 대구시교육청은 인공지능 생성자료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또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한국출판인회의는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기준은 「도서관법」에서 선행적으로 규정하기 보다 출판계가 참여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서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는 인공지능 활용 여부에 따른 분류 기준이 부재하고, 생산 단계의 명확한 기준 없이 「도서관법」에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거나 타 법령 및 제도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 시, 납본 대상 판단 과정에서 개념적 혼선 발생 우려가 크므로 과태료 부과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 목적

- 국내에서 생산되는 도서관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장서를 구축하고, 이를 보존하여 국가지식자원으로 후대에 전승

□ 대상 자료

- (납본대상)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및 가제식 자료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등

*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 자료 포함)에 부여받아야 하는 식별번호(도서관법 제23조 제1항)

- (납본제외대상) ▲내용·형태상 통상적인 도서관자료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료 ▲소장자료의 복본자료, 재쇄(중쇄)자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단순 편집한 자료 ▲공중 배포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한정된 집단만을 위한 자료 ▲광고, 상품정보를 주로 게재한 자료 ▲학교 등 공공기관 외에서 제작한 학습·수험·활동 관련 온라인 자료

* (예) 다이어리, 한자연습장, 스티커북, 독후감노트, 실습일지, 노래가사모음집, 단어카드, 퍼즐, 플래시카드, 미리보기 기능의 체험판 온라인 자료, 50면 미만의 온라인 자료 등